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76호 2023. 10. 12.(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공 고

-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3-1281호)
- 예천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예천군 공고 제2023-1286호)
-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3-1288호)
- 예천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 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23-1290호)
-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예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23-1294호)
-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예천군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3-1295호)
- 「예천활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입법예고(예천군 체육사업소 공고 제2023-36호)

회									
람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담당관(전화 650-6065)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관계 법령의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를 보완하여 지역교육지원 사업 업무 추진 및 (재)예천군민장학회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 결산서 제출 기한 변경(안 제6조)
 -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4.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행정지원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katie2357@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행정지원실

3) 팩스 : 054-650-608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행정지원실(전화: 054-650-608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를 “장학회”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장학회”를 “예천군민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로,
“군이”를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수”를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6조 중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진흥을 위한 공익법인 “예천군민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함으로써 장학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 ----- ----- -- <u>장학회</u>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연금”이라 함은 <u>장학회</u> 의 기금조성과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u>군이</u> 지원하는 자금을 2. (생략)	제2조(정의) ----- ----- ----. 1. ----- <u>예천군민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u> -- <u>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u> 이 ----- 2. (현행과 같음)
제3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① 군수는 장학회의 기금조성과 특정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조(출연금 및 운영자금) ① <u>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u> ----- ----- ----- -----.
제5조(사업) ① (생략)	제5조(사업) (현행 제1항과 같음)
제6조(기금관리상황 보고)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종료 시에는 결산서를 작성하여 <u>다음연도 1</u>	제6조(기금관리상황 보고) ----- ----- ----- <u>회계연도가</u>

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
-----.

예천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공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예천군의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예 천 군 수

1. 단계별집행계획 총괄표

구 분		미집행시설 현황		미집행 사업비 (백만원)	단계별집행계획(㎡)										비고	
					1단계						2-1단계		2-2단계			
		1년차 (2023년)			2년차 (2024년)		3년차 (2025년)		4~5년차 (2026~27년)		6년차이후 (2028년~)					
		개소 (개)	면적 (㎡)		개소 (개)	면적 (㎡)	개소 (개)	면적 (㎡)	개소 (개)	면적 (㎡)	개소 (개)	면적 (㎡)	개소 (개)	면적 (㎡)		
합 계		129	451,055	85,599	3	3,081	5	25,591	5	146,250	-	-	116	276,133		
교통 시설	계	77	93,011	30,920	3	3,081	4	5,616	3	12,420	-	-	67	71,894		
	도로	소계	69	85,121	28,361	2	2,611	4	5,616	3	12,420	-	-	60	64,474	
		대 로	-	-	-	-	-	-	-	-	-	-	-	-	-	
		중 로	15	44,911	14,911	1	1,352	-	-	2	11,600	-	-	12	31,959	
		소 로	54	40,210	13,450	1	1,259	4	5,616	1	820	-	-	48	32,515	
	주차장	8	7,890	2,559	1	470	-	-	-	-	-	-	7	7,420		
공간 시설	계	42	237,597	44,552	-	-	1	19,975	2	133,830	-	-	39	83,792		
	광 장	2	3,624	609	-	-	-	-	-	-	-	-	2	3,624		
	공 원	9	188,491	34,514	-	-	1	19,975	2	133,830	-	-	6	34,686		
	녹 지	31	45,482	9,429	-	-	-	-	-	-	-	-	31	45,482		
공공 문화 체육 시설	계	7	117,697	9,804	-	-	-	-	-	-	-	-	7	117,697		
	학 교	6	111,429	8,803	-	-	-	-	-	-	-	-	6	111,429		
	공공청사	1	6,268	1,001	-	-	-	-	-	-	-	-	1	6,268		
방재 시설	계	3	2,750	323	-	-	-	-	-	-	-	-	3	2,750		
	유수지	3	2,750	323	-	-	-	-	-	-	-	-	3	2,750		

2. 단계별집행계획 세부조서 : 별첨1

3. 관계도서는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346)에서 열람가능 합니다.

[별첨1] 단계별집행계획 세부조서

■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조서

가. 도시지역

1) 예천도시지역

시설명	시설규모			미집행 면적 (㎡)	사업개요 (L=m, A=㎡)	소요 사업비 (천원)	단계 구분	비고
	폭원 (m)	연장 (m)	면적 (㎡)					
소로2-81	8~17	112	1,259	1,259	(L=112, A=1,259)	382,439	1-1	
주차장3	-	-	470	470	(A=470)	216,303	1-1	
1년차 시설수 : 2개, 사업비:						598,742	천원	
소로3-133	6	670	4,292	353	(L=54, A=353)	349,223	1-2	
2년차 시설수 : 1개, 사업비:						349,223	천원	
중로1-2	20	832	17,427	9,115	(L=445, A=9,115)	4,967,386	1-3	
소로1-10	10	360	3,554	820	(L=81, A=820)	398,503	1-3	
남산공원	-	-	68,856	68,856	(A=68,856)	11,989,117	1-3	
서본공원	-	-	64,974	64,974	(A=64,974)	13,920,291	1-3	
3년차 시설수 : 4개, 사업비:						31,275,297	천원	
중로3-12	12	164	1,799	1,799	(L=164, A=1,799)	1,285,869	2-2	
중로3-13	12	125	1,317	1,317	(L=125, A=1,317)	1,334,032	2-2	
소로1-35	10	120	1,081	1,081	(L=120, A=1,081)	1,033,344	2-2	
소로2-56	8	98	812	812	(L=98, A=812)	136,806	2-2	
소로2-77	8	116	875	875	(L=116, A=875)	434,158	2-2	
소로2-78	8	105	782	782	(L=105, A=782)	717,862	2-2	
소로2-79	8	323	2,179	2,179	(L=323, A=2,179)	1,819,702	2-2	
소로3-16(특)	4	50	202	202	(L=50, A=202)	131,372	2-2	
소로3-45	6	100	606	606	(L=100, A=606)	170,396	2-2	
소로3-61	6	30	198	198	(L=30, A=198)	60,700	2-2	
소로3-71	6	110	748	348	(L=48, A=348)	58,116	2-2	
주차장2	-	-	1,840	1,840	(A=1,840)	1,614,556	2-2	
대심제1 어린이공원	-	-	2,230	2,230	(A=2,230)	1,793,552	2-2	

2) 감천도시지역

3) 호명 도시지역

4) 용궁도시지역

시설명	시설규모			미집행 면적 (㎡)	사업개요 (L=m, A=㎡)	소요 사업비 (천원)	단계 구분	비고
	폭원 (m)	연장 (m)	면적 (㎡)					
중로2-2	15	362	5,333	1,352	(L=84, A=1,352)	226,387	1-1	
1년차 시설수 : 1개, 사업비:						226,387 천원		
읍부공원	-	-	12,355	12,355	(A=12,355)	1,522,916	2-2	
6년차 이후 시설수 : 1개, 사업비:						1,522,916 천원		

나. 비도시지역

1) 용문상금곡지구

시설명	시설규모			미집행 면적 (㎡)	사업개요 (L=m, A=㎡)	소요 사업비 (천원)	단계 구분	비고
	폭원 (m)	연장 (m)	면적 (㎡)					
소로3-32	6	170	1,006	1,006	(L=170, A=1,006)	279,678	1-2	
2년차 시설수 : 1개, 사업비:						279,678 천원		

2) 예천온천지구

시설명	시설규모			미집행 면적 (㎡)	사업개요 (L=m, A=㎡)	소요 사업비 (천원)	단계 구분	비고
	폭원 (m)	연장 (m)	면적 (㎡)					
중로1-2	20	131	2,345	2,345	(L=131, A=2,345)	410,957	2-2	
중로2-1	15	172	2,890	2,890	(L=172, A=2,890)	567,867	2-2	
중로3-1	12	34	427	427	(L=34, A=427)	83,059	2-2	
중로3-2	12	202	2,504	2,504	(L=202, A=2,504)	470,886	2-2	
중로3-3	12	463	5,541	5,541	(L=463, A=5,541)	1,023,875	2-2	
중로3-4	12	222	2,740	2,740	(L=222, A=2,740)	509,533	2-2	
소로1-1	10	111	1,148	1,148	(L=111, A=1,148)	227,645	2-2	
소로1-2	10	46	461	461	(L=46, A=461)	84,687	2-2	
소로2-1	8	60	690	690	(L=60, A=690)	134,263	2-2	
소로2-2	8	80	676	676	(L=80, A=676)	138,035	2-2	
소로3-1	6	50	294	294	(L=50, A=294)	58,976	2-2	
소로3-2	6	36	230	230	(L=36, A=230)	46,138	2-2	
소로3-3	6	58	434	434	(L=58, A=434)	82,362	2-2	
소로3-4	6	26	165	165	(L=26, A=165)	29,326	2-2	
소로3-5	6	350	2,100	2,100	(L=350, A=2,100)	367,964	2-2	
소로3-6(특)	4	88	352	352	(L=88, A=352)	66,615	2-2	
소로3-7(특)	4	70	281	281	(L=70, A=281)	49,197	2-2	
소로3-8(특)	4	70	255	255	(L=70, A=255)	49,166	2-2	

시설명	시설규모			미집행 면적 (㎡)	사업개요 (L=m, A=㎡)	소요 사업비 (천원)	단계 구분	비고
	폭원 (m)	연장 (m)	면적 (㎡)					
소로3-9	4	37	200	200	(L=37, A=200)	35,954	2-2	
소로3-10	4	72	270	270	(L=72, A=270)	49,289	2-2	
소로3-11	4	42	168	168	(L=42, A=168)	33,449	2-2	
소로3-12	4	27	114	114	(L=27, A=114)	24,009	2-2	
소로3-13 (특)	2	224	460	460	(L=224, A=460)	81,912	2-2	
소로3-14	2	19	46	46	(L=19, A=46)	7,865	2-2	
소로3-15 (특)	2	251	498	498	(L=251, A=498)	87,992	2-2	
소로3-16 (특)	2	65	132	132	(L=65, A=132)	23,116	2-2	
소로3-17 (특)	2	514	1,038	1,038	(L=514, A=1,038)	181,521	2-2	
소로3-18 (특)	2	30	63	63	(L=30, A=63)	11,046	2-2	
소로3-19 (특)	2	243	488	488	(L=243, A=488)	86,395	2-2	
주차장1	-	-	1,690	1,690	(A=1,690)	211,081	2-2	
주차장2	-	-	680	680	(A=680)	78,817	2-2	
주차장3	-	-	1,170	1,170	(A=1,170)	121,075	2-2	
경관녹지1	-	-	2,820	2,820	(A=2,820)	292,294	2-2	
경관녹지2	-	-	950	950	(A=950)	107,753	2-2	
경관녹지3	-	-	690	690	(A=690)	73,293	2-2	
경관녹지4	-	-	520	520	(A=520)	50,137	2-2	
경관녹지5	-	-	2,290	2,290	(A=2,290)	213,817	2-2	
경관녹지6	-	-	2,730	2,730	(A=2,730)	312,306	2-2	
경관녹지7	-	-	400	400	(A=400)	37,332	2-2	
경관녹지8	-	-	2,660	2,660	(A=2,660)	248,307	2-2	
경관녹지9	-	-	1,850	1,850	(A=1,850)	200,087	2-2	
경관녹지10	-	-	1,350	1,350	(A=1,350)	182,089	2-2	
경관녹지11	-	-	1,550	1,550	(A=1,550)	152,180	2-2	

시설명	시설규모			미집행 면적 (㎡)	사업개요 (L=m, A=㎡)	소요 사업비 (천원)	단계 구분	비고
	폭원 (m)	연장 (m)	면적 (㎡)					
경관녹지12	-	-	650	650	(A=650)	63,238	2-2	
경관녹지13	-	-	400	400	(A=400)	42,907	2-2	
경관녹지14	-	-	3,160	3,160	(A=3,160)	331,851	2-2	
경관녹지15	-	-	340	340	(A=340)	31,661	2-2	
경관녹지16	-	-	620	620	(A=620)	67,929	2-2	
경관녹지17	-	-	40	40	(A=40)	5,236	2-2	
경관녹지18	-	-	80	80	(A=80)	11,457	2-2	
유수지1	-	-	860	860	(A=860)	95,546	2-2	
유수지2	-	-	1,370	1,370	(A=1,370)	171,113	2-2	
유수지3	-	-	520	520	(A=520)	56,606	2-2	
6년차 이후 시설수 : 53개, 사업비: 8,181,211 천원								

3) 호명지구

시설명	시설규모			미집행 면적 (㎡)	사업개요 (L=m, A=㎡)	소요 사업비 (천원)	단계 구분	비고
	폭원 (m)	연장 (m)	면적 (㎡)					
중로3-호3	12	204	2,485	2,485	(L=204, A=2,485)	820,883	1-3	
3년차 시설수 : 1개, 사업비: 820,883 천원								
중로2-호1	15	251	3,894	3,107	(L=207, A=3,107)	1,153,417	2-2	
중로2-호2	15	444	7,052	2,999	(L=200, A=2,999)	620,784	2-2	
중로3-호1	12	684	8,200	2,724	(L=227, A=2,724)	594,846	2-2	
중로3-호2	12	749	9,097	3,566	(L=295, A=3,566)	841,524	2-2	
소로1-호2	10	282	2,854	2,854	(L=282, A=2,854)	802,332	2-2	
소로2-호1	8	99	817	817	(L=99, A=817)	346,198	2-2	
소로2-호2	8	132	1,089	1,089	(L=132, A=1,089)	285,837	2-2	
소로2-호3	8	117	999	999	(L=117, A=999)	235,518	2-2	
소로2-호4	8	108	914	914	(L=108, A=914)	419,694	2-2	

시설명	시설규모			미집행 면적 (㎡)	사업개요 (L=m, A=㎡)	소요 사업비 (천원)	단계 구분	비고
	폭원 (m)	연장 (m)	면적 (㎡)					
소로2-호5	8	128	1,024	1,024	(L=128, A=1,024)	386,557	2-2	
소로2-호6	8	85	711	711	(L=85, A=711)	201,460	2-2	
소로2-호7	8	135	1,113	1,113	(L=135, A=1,113)	410,202	2-2	
소로3-호1	6	81	502	502	(L=81, A=502)	179,784	2-2	
소로3-호2	6	74	478	478	(L=74, A=478)	174,923	2-2	
소로3-호3	6	136	826	826	(L=136, A=826)	385,529	2-2	
소로3-호8	6	145	924	924	(L=145, A=924)	290,033	2-2	
소로3-호9	6	62	378	378	(L=62, A=378)	125,975	2-2	
소로3-호10	4	381	1,545	1,545	(L=381, A=1,545)	410,017	2-2	
소로3-호11	4	143	567	567	(L=143, A=567)	94,689	2-2	
소로3-호12	4	31	128	128	(L=31, A=128)	21,376	2-2	
주차장호1	-	-	560	560	(A=560)	94,016	2-2	
주차장호2	-	-	620	620	(A=620)	69,234	2-2	
주차장호3	-	-	860	860	(A=860)	153,876	2-2	
광장호1	-	-	1,757	1,757	(A=1,757)	381,115	2-2	
광장호2	-	-	1,867	1,867	(A=1,828)	227,606	2-2	
호명근린공원	-	-	11,078	11,078	(A=11,078)	1,591,835	2-2	
호명1소공원	-	-	5,465	5,465	(A=5,465)	852,975	2-2	
호명2소공원	-	-	1,730	1,730	(A=1,730)	350,224	2-2	
호명3소공원	-	-	1,828	1,828	(A=1,828)	324,885	2-2	
완충녹지호1	-	-	2,974	2,974	(A=2,974)	732,103	2-2	
완충녹지호2	-	-	1,151	1,151	(A=1,151)	291,449	2-2	
경관녹지호1	-	-	1,892	1,892	(A=1,892)	1,129,895	2-2	
경관녹지호2	-	-	2,886	2,886	(A=2,886)	295,768	2-2	
경관녹지호3	-	-	3,179	3,179	(A=3,179)	599,874	2-2	
경관녹지호4	-	-	1,353	1,353	(A=1,353)	268,301	2-2	

[illegible]

4) 비룡산 문화공원 일원

시설명	시설규모			미집행 면적 (㎡)	사업개요 (L=m, A=㎡)	소요 사업비 (천원)	단계 구분	비고
	폭원 (m)	연장 (m)	면적 (㎡)					
소로2-1	8	170	1,575	1,575	(L=170, A=1,575)	290,825	1-2	
문화공원1	-	-	19,975	19,975	(A=19,975)	2,168,630	1-2	
2년차 시설수 : 2개, 사업비:						2,459,455	천원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외 8건의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특별회계 및 기금을 제외

한 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의 8건의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로 연장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일괄개정 조례 대상 : 9건(8개 부서)

- 【붙임】 자치법규 일괄개정 대상 목록 참조

나. 특별회계 및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
장(안 제1조 ~ 제9조)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ilmare@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기획예산실

3) 팩스 : 054-650-60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예산실(전화: 054-650-6817)

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자치법규 일괄개정 대상 목록

연 번	부 서	조 례 명	관련 조문	비 고
1	기 획 예 산 실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	법률(재량)
2	행 정 지 원 실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조례
3	새마을경제과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10조	조례
4	사 회 복 지 과	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제7조	시행규칙
5	주 민 행 복 과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의2	조례
6	환 경 관 리 과	예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법률(재량)
7	"	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시행령
8	농 정 과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제3항	조례
9	안 전 재 난 과	예천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조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예산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조(「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예천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4조(「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5조(「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전단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예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조(「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

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2024년”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예천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 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제9조(존속기한) ----- ---- <u>2028년 12월 31일</u> ----- ----.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u>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 12. 31.일까지로 한다.</u>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u>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 ----- ----- ----- --.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10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제10조(존속기한) ----- --- <u>2028년 12월 31일</u> ----- ---.

「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제7조(존속기한) ----- -- <u>2028년 12월 31일</u> ----- --.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u>2023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 <u>2028년 12월 31일</u> -----. ----- ----- ----- ----- ----- -----.

「예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제8조(존속기한) ----- ---- <u>2028년 12월 31일</u> ----- ----.

「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제8조의2(존속기한) ----- ----- <u>2028년 12월 31일</u> ----- -----.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행	개정안
제4조(기금의 조성) ①·② (생략)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u>2024년</u> 까지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2028년 12월 31일</u> ----- -----.

「예천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u>2023년 12월 31일</u> 까지로 한다.	제3조(존속기한) ----- ----- <u>2028년 12월 31일</u> ----- -----.

예천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 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 건축 가능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어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예 천 군 수

1. 폐지이유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 별표20의 규정 따라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2004.12.30. 「예천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 건축 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나. 같은 법 시행령 별표20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공장건축 가능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자연보전권역,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으로 한정되어 조례의 제정 목적과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천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 건축 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

3. 폐지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이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ugongisan@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도시과

3) 팩스 : 054-650-634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도시과(전화:054-650-634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조례 제 호

예천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 건축 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예천군 계획관리지역안에서의 공장 건축 가능지역지정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예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예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예천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 및 불부합으로 인한 인용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상위법 개정 및 불부합으로 인한 인용 조문 등 정비(안 제1조 ~ 제3조)
- 나. 「행정기본법」 개정('23.6.28. 시행)으로 인한 만 나이 정비(안 제4조 ~ 제14조)
- 다. 조직개편 반영 사항 등 정비(안 제15조 ~ 제16조)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xuanzhen1124@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기획예산실

3) 팩스 : 054-650-60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예산실(전화: 054-650-68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예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예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예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을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으로 한다.

제2조(「예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의 개정) 예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영 제48조”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로 한다.

제3조(「예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예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중 “「한국수자원공사법」 제5조”를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로 한다.

제4조(「예천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만 5세”를 “5세”로 한다.

제5조(「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2항제2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6조(「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의 개정)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본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7조(「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만 100세”를 “100세”로 한다.

제8조(「예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의 개정) 예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9세 이상 만 24세”를 “9세 이상 24세”로 한다.

제9조(「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가목 중 “만2세”를 “2세”로 한다.

제10조(「예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 예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만 70세”를 “70세”로 한다.

제11조(「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2조(「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호 중 “만4세 이상 만18세”를 “4세 이상 18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만19세 이상 만64세”를 “19세 이상 64세”로 한다.

제9조제1항제11호 중 “만 3세”를 “3세”로 한다.

제13조(「예천군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8호 중 “만18세”를 “18세”로 한다.

제14조(「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8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15조(「예천군 정보공개 조례」의 개정) 예천군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제16조(「예천군 공인 조례」의 개정) 예천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예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 ----- ----- ----- -----.

「예천군 주민등록사무의 읍면위임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1. · 2. (생략) 3. · 4. 삭제 5. 법 제29조 및 영 제4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 (읍·면장도 가능)	제2조(권한의 위임) ----- ----- ----- -----. 1. · 2. (현행과 같음) 5.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 ----- -----

「예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 ----- -----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 국수자원공사에서 사용	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 -----
5. ~ 9. (생략)	5. ~ 9. (현행과 같음)

「예천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9조(보육대상) ① 보육대상자는 제2조 대상자의 자녀로 만 5세 이하의 취학 전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대상자가 정원을 초과 할 경우에는 별표 1 점수표의 합이 높은 순서를 따르며 동일순위일 경우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보육대상) ① ----- ----- 5세 ----- ----- -----.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예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전통시장 청년 상인 발굴·육성 등) ① (생략)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게 제3조제1항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략) 2.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한 <u>만 19세</u>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	제12조의3(전통시장 청년 상인 발굴·육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1. (현행과 같음) 2. ----- ----- <u>19세</u> ----- -----

「예천군 청년 기본 조례」

현행	개정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u>만 19세</u>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단, 개별사업의 성격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2. ~ 5. (생략)	제3조(정의) ----- -----. 1. ----- ----- -- <u>19세</u> ----- -----. ----- -----. 2. ~ 5. (현행과 같음)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8조(장수효도수당 등 지급) ① (생략)	제8조(장수효도수당 등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장수축하금은 신청일 기준 현재 예천군에 2년 이상 계속하 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u>만 1</u> <u>00세</u> 에 도달하는 해에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내 지급할 수 있다.	② ----- ----- ----- ----- <u>100</u> <u>세</u> ----- ----- -----.

「예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여성청소년”이란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u>만 9세</u> <u>이상 만 24세</u>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1. ----- ----- <u>9세 이</u> <u>상 24세</u> ----- -----.
2. 3. (생략)	2. 3. (현행과 같음)

「예천군 삼강문화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7조(관람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람자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면제 가. 만2세 이하의 영유아 나. ~ 하. (생략) 2. 3. (생략) ② (생략)	제7조(관람료의 감면) ① ----- ----- -----. 1. ----- ----- 가. 2세 ----- 나. ~ 하. (현행과 같음) 2.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예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예천군에 주소를 둔 만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1. (현행과 같음) 2. ----- ----- ---- 70세 ----- -----.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6조(사용료) ① 군수는 온천장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제6조(사용료) ① ----- -----

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할인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u>만 65세</u> 이상 경로 우대자 2. ~ 6. (생략) ②·③ (생략)	-----. ----- ----- -----. 1. <u>65세</u> ----- 2.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예천군 곤충생태원 관리 및 운영 조례」

현행	개정안
제5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청소년”이란 <u>만4세 이상 만18세</u> 이하의 자를 말한다. 2. “일반”이란 <u>만19세 이상 만64세</u> 이하의 자를 말한다. 3. ~ 8. (생략) 제9조(무료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 10. (생략) 11. <u>만 3세</u> 이하의 유아 12. ~ 14. (생략) ② (생략)	제5조(용어의 정의) ----- ----- -----. 1. ----- <u>4세 이상 18세</u> ----- -----. 2. ----- <u>19세 이상 64세</u> ----- -----. 3. ~ 8. (현행과 같음) 제9조(무료이용) ① ----- ----- ----- -----. 1. ~ 10. (현행과 같음) 11. <u>3세</u> ----- 12. ~ 1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예천군 수도급수 조례」

현행	개정안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감면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면이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8조(요금 등의 감면) ① ----- ----- -----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u>만18세</u>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8. ----- <u>18세</u> ----- ----- -----
9. · 10. (생략)	9. · 10.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현행	개정안
제19조(감면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감면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면이 큰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9조(감면 등) ① ----- ----- ----- ----- ----- ----- -----.
8.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u>만 18세</u> 미만의 자녀가 3명 이	8. ----- <u>18세</u> -----

상인 다자녀 가구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예천군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예천군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등을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예천군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행정기본법」 등 상위법령 개정 및 불부합으로 인한 인용 조문 등을 일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적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위법 개정 및 불부합으로 인한 인용 조문 등 정비(안 제1조 ~ 제3조)

나. 「행정기본법」 개정('23.6.28. 시행)으로 인한 만 나이 정비(안 제4조 ~ 제14조)

다. 조직개편 반영 사항 등 정비(안 제15조 ~ 제16조)

4. 개정규칙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xuanzhen1124@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기획예산실

3) 팩스 : 054-650-605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기획예산실(전화: 054-650-682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예천군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
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예천군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안

제1조(「예천군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의 개정) 예천군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제1호”를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로 한다.

제2조(「예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의 개정) 예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4조”를 “제49조”로 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만 19세미만”을 “19세 미만”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3조(「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제6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4조(「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의 개정)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예천군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현행	개정안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u>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2제1호</u> 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 ----- ----- ----- ----. ----- ----- <u>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u>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예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u>제44조</u> 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	제1조(목적) ----- ----- <u>제49조</u> ----- ----- ----- -----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u>만 19세미만</u>의 자를 말한다. 다만, <u>만 19세</u>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 이한 자를 제외한다. 2. (생략)	----- -----. 제2조(정의) ----- ----- -----. 1. ----- <u>19세 미만</u>----- -----, ----- <u>19세</u>----- ----- -----. 2. (현행과 같음)
--	---

「예천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

현행	개정안
제10조(감면) ① ~ ③ (생략) ④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제2 호, 제6호, 제7호 및 제8호에 따 른 감면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u>만 18세</u> 미만의 자녀가 3명 이 상인 다자녀 가구: 가정용 1단 계 요율의 10세제곱미터에 해 당하는 사용요금 감면 ⑤ (생략)	제10조(감면) ① ~ ③ (현행과 같 음) ④ ----- ----- -----. 1. ~ 5. (현행과 같음) 6. ----- <u>18세</u> ----- ----- ----- ----- ⑤ (현행과 같음)

예천활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활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12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 예천활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예천활체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군민들에게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유치 도모

3. 주요내용

가. 예천활체험센터 시설 규정(안 제3조)

나. 예천활체험센터의 관리 및 운영(안 제4조)

다. 위탁사무 (안 제5조)

라. 사용료 징수(안 제6조)

4. 제정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 체육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dudtns8212@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체육사업소장

3) 팩스 : 054-650-641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체육사업소(전화 : 054-650-6413)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활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건전한 여가생활 증진 및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예천군에서 설치한 예천활체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예천활체험센터(이하 “활체험센터”라 한다) 위치는 예천군 예천읍 청북리 470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설”이란 활체험센터와 그 부수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
2. “이용자”란 활체험센터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3. “사용료”란 활체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수탁자”란 활체험센터 시설을 제4조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설의 운영·관리) ① 군수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능력과 기술을 갖춘 적합한 자에게 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 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탁사무)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활체험센터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
2.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운영 인력 수급, 시설의 유지 관리, 홈페이지 구축 운영 등
4.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용료) 군수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예천군 체육 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별표 6]에 따른다.

제7조(수입금의 처리) ① 시설을 직영 또는 관리위탁할 시, 사용료 수입은 징수한 다음날까지 세입 결의하여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군 금고 휴무일에는 휴무일 다음날까지 납입할 수 있다.

② 시설을 관리위탁할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수입을 운영경비로 충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하여 제1항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제8조(손해보험 등 가입) 군수는 시설운영에 따른 재산손실 및 인명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